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8
------	-----

2023.7.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김동욱 의원(찬성자 5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3.7.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이 일정하지 않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 이외에는 위촉 해제 규정 내용을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함.
-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일을 15일 전으로 일괄 정비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석률 저조에 따른 위원 해촉과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일 단축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입법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1) 해촉기준 정비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각종위원회 조례’)의 개정(2023.3.27.)으로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촉할 수 있게 됨(제8조의2제1항제6호).
 - 이는 시정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위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 그런데 각종위원회 조례 제8조의2에서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간 해촉 기준이 다를 경우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이에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각종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일괄개정함.
- 이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 다른 위원회 조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2) 회의 개최 통보 시기 반영

- 낮은 출석률로 위원회 위원의 해촉이 가능하게 되면 일방적인 회의 개최 통보로 인해 부당한 해촉으로 악용될 수 있어 각종위원회 조례에서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회의 개최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함(제10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됨.
- 다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광장사용 신청서 제출기한이 사용일로부터 7일전(청계·광화문광장), 5일전(서울광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의 개최 통보일’을 15일전으로 개정하면 사용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회의 개최 통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청서 제출기한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함.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둔다.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제7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청)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날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청계천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고) ①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

관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개정사항 중 광장사용 신청서 제출기한과 연계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은 일괄개정에서 삭제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7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 중 회의개최 통보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18호
----------	---------

제안년월일 : 2023년 07월 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개정사항 중 광장사용 신청서 제출기한과 연계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은 일괄개정에서 삭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17조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 중 회의개최 통보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중 “제7조제4항 본문 중 “7일” 을 “15일” 로 한다.” 를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17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를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로 한다.</p> <p>제7조제4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p>	<p>제17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를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로 한다.</p> <p><삭제></p>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5일”을 “15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2일”을 “15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를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5일”을 “15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해제”를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병원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2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4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7조(「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8조(「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0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2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3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6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7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8조(「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9조(「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 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1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2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3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4조(「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5조(「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9조(「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0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1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2조(「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4조(「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5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년 단위(위축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6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 중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9조(「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0조(「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1조(「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5일전”을 “15일전”으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5조(「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5일”을 “15일”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